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 6. 22.)

-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태정)

< 목 차 >

I. 검토경과	1
II. 제출근거	1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1. 결산 총괄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2
4.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2
5. 세입결산	3
6. 세출결산	4
7.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5
8. 계속비 결산	7
9. 예비비 지출	8
10. 다음연도 이월사업	9
IV. 기금결산	10
V. 채권액결산	11
VI. 채무액결산	12
VII. 보조금결산	12
VIII 기타 검토의견	13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10.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6. 5. 10.
- 상정일자: 2016. 6. 22.(제1차 총무위원회)
- 의안번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6~27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6~28호)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결산총괄(결산서 p21)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이월액)
합 계	579,340	582,419	419,211	163,208
일반회계	514,054	514,855	383,477	131,378
특별회계	65,286	67,564	35,734	31,830

2. 세입결산(결산서 p31)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	C/A	C/B
계	579,340	586,164	582,419	3,745	371	3,374	100.5	99.4
일반회계	514,054	517,928	514,855	3,073	371	2,702	100.2	99.4
특별회계	65,286	68,236	67,564	672	0	672	103.5	99.0

3. 세출결산(결산서 p33)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D)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액 (F)	집행잔액 G=C-E-F	불용비율 G/C(%)
계	488,983	90,357	579,340	472,453	419,211	80,510	79,619	13.74
일반회계	429,438	84,616	514,054	436,081	383,477	75,108	55,469	10.79
특별회계	59,545	5,741	65,286	36,372	35,734	5,402	24,150	36.99

4.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결산서 p35)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차인잔액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82,419	419,211	163,208	34,583	31,957	9,837	4,797	82,034
일반회계	514,855	383,477	131,378	31,112	30,043	9,819	4,794	55,610
특별회계	67,564	35,734	31,830	3,471	1,914	18	3	26,424

5. 세입결산(결산서 p41)

가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과 목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517,928	514,855	3,073	372	2,701	99.4
지방세		22,462	21,317	1,145	228	917	94.9
세외수입		18,103	16,175	1,928	144	1,784	89.3
	경세외수입	7,833	7,821	12		12	99.8
	입세외수입	10,270	8,354	1,916	144	1,772	81.3
지방교부세		194,223	194,223				1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497	17,497				100
보조금		133,461	133,461				100
보전수입등		132,182	132,182				100

나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과 목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68,236	67,564	672		672	99.0
공기업		29,266	29,192	74		74	99.7
의료보호기금		701	701				100
주차장관리		1,514	916	598		598	60.5
산업단지조성사업		10,241	10,241				100
수질개선		6,341	6,341				100
담주변지역지원 사업		842	842				100
기반시설		56	56				100
농업발전		19,275	19,275				100

6. 세출결산(결산서 p65)

가.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514,054	436,081	383,477	75,108	55,469
의회운영위원회	822	730	730		92
총무위원회	235,721	190,793	186,751	8,278	40,692
산업건설위원회	277,511	244,558	195,996	66,830	14,685

나.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별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소 계	277,511	244,558	195,996	66,830	14,685
안전총괄과	16,190	14,259	12,815	2,057	1,318
승강기경제과	8,358	7,731	7,731	199	428
산림녹지과	32,629	27,395	22,909	9,343	377
녹색환경과	20,569	19,765	14,881	5,317	371
건설과	65,069	58,984	47,153	16,824	1,092
도시건축과	54,797	42,290	27,056	23,587	4,154
농업기술센터	58,652	53,248	42,934	9,102	6,616
상하수도사업소	20,287	19,967	19,598	369	32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960	919	919	32	9

다.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65,286	36,372	35,734	5,402	24,150
공 기 업	27,853	19,998	19,397	2,963	5,493
의 료 보 호 기 금	716	701	701		15
주 차 장 관 리	864	494	494		370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9,378	6,378	6,360	2,221	797
수 질 개 선	6,337	6,073	6,054	218	65
댐주변지역지원사업	841	840	840		1
기 반 시 설	35				35
농 업 발 전	19,262	1,888	1,888		17,374

7.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387)

□ 이 용(일반회계): 해당사항 없음(p389)

□ 전 용(일반회계) (p390)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30건	49,252,685	1,188,212	1,188,212	

※ 세부내역: 결산서(p390)

검 토 의 견

- 예산은 사전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추진 방법이나 내용 등을 충분히 예측 편성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부득이한 경우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변화, 제반 여건의 변동 등에 맞추어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부족액 지급, 퇴직급여 법정부담금 납부, 농촌현장포럼 추진, 지역 역량강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 체(일반회계)(결산서 p393)

- 내역: 2건 2,506,609천원

- 사유: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인한 업무이관

※ 세부내역: 결산서(p393)

검 토 의 견

- 예산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 조직개편에 따라 2015. 7. 1. 부서별로 관련예산을 이체 승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8. 계속비 결산(결산서 부속서류 p463)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총 투자액				당해연도 집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93,399,260	52,995,167	32,090,901	8,313,192	28,810,153	17,504,816	2,999,756	8,305,581
목재문화체험장조성	3,986,272	3,764,734	221,538	0	1,576,557	1,360,630	215,927	0
스피드익스트림타운	2,997,660	1,595,375	1,402,285	0	1,998,830	895,128	1,103,702	0
치유의숲조성	1,648,319	279,872	1,368,447	0	1,248,319	128,192	1,120,127	0
농촌테마공원조성	14,378,521	5,073,472	6,663,362	2,641,687	6,060,036	3,418,349	0	2,641,687
소규모용수개발	21,228,694	11,368,782	9,678,254	181,658	1,373,575	1,199,528	0	174,047
읍면소재지종합정비	31,168,778	18,885,787	9,847,104	2,435,887	9,278,997	6,843,110	0	2,435,887
권역단위종합정비	17,431,016	12,027,145	2,349,911	3,053,960	6,713,839	3,659,879	0	3,053,960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560,000	-	560,000	-	560,000	-	560,000	-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관리하며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총 8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모두 타당함.

9. 예비비 지출(결산서 p397)

(단위: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합 계			686,600	584,552	584,552		102,048
건설과	지역및도시	주민편익 사업 추진	50,000	42,467	42,467		7,533
건설과	농업·농촌	경지정리	70,000	70,000	70,000		
건설과	농업·농촌	한발대비 용수 개발	40,000	40,000	40,000		
건설과	수자원	소하천 유지 보수	50,000	42,635	42,635		7,365
건설과	도로	도로 유지관리	50,000	50,000	50,000		
건설과	도로	도로 유지관리	75,000	72,773	72,773		2,227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가축방역지원	219,600	219,600	219,600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가축방역지원	9,000	3,638	3,638		5,362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가축방역지원	23,000	23,000	23,000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가축방역지원	80,000	20,439	20,439		59,561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가축방역지원	20,000				20,000

검 토 의 견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이나 부족한 세출예산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 구제역 긴급방역지원, 공공시설물 피해복구 지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등에 대한 지출임.

10.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477)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명시이월	111	87,432	33,295	
사고이월	104	117,003	30,508	
계속비이월	18	99,057	11,305	

검 토 의 견

-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준공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사업대상지 미선정, 토지보상 미협의를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 이월 사유가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IV 기금결산 (결산서부속서류 p497)

(단위: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12,840,358	395,370	1,187,483	792,113	13,235,728
사회복지기금	3,860,414	58,602	122,002	63,400	3,919,016
식품진흥기금	43,643	6,011	9,511	3,500	49,654
재난관리기금	834,463	△10,467	519,698	530,165	823,996
중소기업육성기금	6,369,577	278,131	440,179	162,048	6,647,708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1,730	△1,460	11,540	13,000	500,270
옥외광고정비기금	136,890	71,339	71,339	-	208,229
체육진흥기금	1,093,641	△6,786	13,214	20,000	1,086,855

검 토 의 견

- 2015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840,358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87,483천원이고, 사용액은 792,113천원으로 차인잔액은 13,235,728천원임.
- 기금 지출액은 792,113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 사회복지 기금운용에 63,400천원
 - 역도부 우수선수 육성사업 지원 20,000천원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복합찬기 구입 3,500천원
 -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 외 7개 사업에 530,165천원
 - 중소기업융자 지원에 162,048천원
 -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에 13,000천원이 각각 지출되었음.

V 채권액 결산 (결산서 p609)

○ 회계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788,815	238,414	320,509	4,706,720	
일반회계	소 계	4,415,826	60,000	120,000	4,355,826
	전화선예치금	12,474	-	-	12,474
	학자대여금	4,343,352	60,000	60,000	4,343,352
	농특산물판매장	60,000	-	60,000	0
특별회계	소 계	33,015	28,247	56,012	5,250
	농업발전기금	5,250	-	-	5,250
	산업단지조성사업	27,765	28,247	56,012	0
기금	소 계	339,974	150,167	144,497	345,644
	사회복지기금	339,974	150,167	144,497	345,644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검 토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4,788,815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238,414천원이 발생하고, 320,509천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706,720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345,644천원, 보증금채권이 12,474천원, 융자금 채권 4,348,602천원, 융자사업은 상환 기일 내에 회수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융자금이 장기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VI 채무액 결산(결산서 p619)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0원에서 당해 연도에는 채무 발생과 상환이 없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VII 보조금 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243)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액)	
합 계	186,529,793 (70,524,539)	185,481,211 (70,616,278)	153,191,807 (52,768,621)	26,050,720 (15,013,481)	6,238,684 (2,834,176)	
일 반 회 계	181,758,644 (70,496,002)	180,710,062 (70,587,741)	148,645,621 (52,744,735)	25,832,174 (15,012,446)	6,232,267 (2,830,560)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 금	193,208	193,208	193,208	-	-
	수질개선	4,577,941 (28,537)	4,577,941 (28,537)	4,352,978 (23,886)	218,546 (1,035)	6,417 (3,616)

※ 군비부담액은 70,616,278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8.1%에 해당함
※ ()내서는 군비부담액 임.

검 토 의 견

- 2015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85,481,211천원으로 예산액 186,529,793천원 대비 99.4%이고, 집행액은 153,191,807천원으로 예산액의 82.1%이며, 26,050,720천원이 이월되고 6,238,684천원을 반납하였음.
- 군비부담액은 70,616,278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8.1%에 해당됨.

VIII 기타 검토의견

- 결산은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등 거래 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예산의 집행여부, 편성된 예산의 계획대로 사용여부, 위법지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균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5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보면, 재정기준 강화 및 지출 자율 통제 등 재정원칙의 준수 아래 자율과 책임을 함께하면서, 자체 재원 확충 강화와 투명성 확보로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 재정 계획수립 내실화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현액의 27.82%인 153,413 백만원이 이월되고, 74,12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세입면에서 보면 실제 수납액이 582,4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599 백만원(3.48%)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33.35%)이고,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8.91%와 60.08%이며,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6,064,596원, 지방세 부담액은 337,118원으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6.44%로 열악한 실정임.

- 세출면에서는 지출액이 419,21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720 백만원(4.15%)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20.17%), 사회복지(20.03%), 기타(12.07%), 국토 및 지역개발(9.95%) 순이고,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수송 및 교통(143.66%) 보건(118.79%) 순이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재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경비의 집행에 있어서 부서 간의 균형유지, 선심성, 소모성, 불요불급한 경비 억제, 경직성 경비 최소화 등 가용 자원을 최대화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는 등 예산 집행의 건전성, 계획성,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각종 사업면에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 하였으나,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장기발전 계획이나, 중기 재정운영계획 등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 심사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보조금은 국가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 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써, 보조 사업은 특정사업의 진흥이 나 장려, 행정목적 수행 등 공익적 지출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사후관리가 요구됨.

- 또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 운영 하는 기금은 7종에 14,027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운용액이 5.6%인 792백만원으로 운용실적이 저조하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여유자금은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은행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나, 채권 관리에 있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권은 기일 내에 회수조치 해야 하나 생활안정기금의 기일도래 채권은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어, 군 기금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생활안정 기금 채권연체자에 대하여는 조기 회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